

장애인 차별

안내 자료

DFEH



캘리포니아 공정주택법이 차별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은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주택 관련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차별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주택 시설의 임대, 리스 또는 판매 거부
- 주택 시설의 판매, 임대 또는 리스 협상 거부
- 실제로 검사, 판매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 시설에 대해 해당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
- 주택 시설과 관련하여 불리한 약관, 조건, 권한, 설비 또는 서비스 제공
- 판매 및 임대 계약 취소 또는 해지
- 다세대 주거 시설에서 장애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하지 못한 경우
- 격리되거나 분리된 주택 시설 제공
- 주택 시설을 장애인이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 주택의 개조가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기존 시설의 합당한 개조를 해당 장애인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동등하게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서비스상의 합당한 조항 추가 거부
- 주택 또는 주택 관련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차별적인 규정, 지침, 약관 또는 조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장애에 해당하는 기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삶의 중요한 활동을 제한하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결함, 이상 또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애의 정의에는 암이나 개인별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모든 건강상의 결함을 포함한 의학적 상태는 물론 HIV/AIDS의 진단도 포함됩니다. 장애의 정의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인식되는 개인,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개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애의 정의에는 성적 행동 이상, 상습 도박, 도벽, 방화벽 또는 규제 약물이나 기타 마약류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활성물질사용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삶의 중요한 활동의 예에는 신체, 정신, 사회 활동과 일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다양할 활동이 포함됩니다. 장애든 상태 '제한'이든 삶의 중요한 활동은 의약품, 보조 기기, 보철, 합당한 편의 시설 등의 보완 수단과 상관없이(이러한 보완 수단 자체가 삶의 중요한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한)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민사적 구제

1. 이전에 거부된 주택을 이용 가능하게 조치
2.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 향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규정 변경
4.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벌금, 신고, 감시와 같은 기타 조치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공정 고용 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본 자료의 앞면에 나온 정보를 사용해 DFEH에 연락합니다.
2. 차별이나 괴롭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임대료 영수증, 신청서, 문자 메시지, 기타 전자 통신 등과 같은 사건 관련 기록과 문서, 그리고 기타 가능성 있는 차별의 증거를 잘 보관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DFEH에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DFEH는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를 모두 지원하며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DFEH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의뢰합니다.

법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 이전에 거부된 주택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조치,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향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규정 변경,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 등의 구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당사자는 차별 혐의가 있는 행동에 대해 2년 내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DFEH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DFEH에 민원이 계류 중인 기간은 2년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장애가 있는 세입자의 권리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택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괴롭힘 및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동등하게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서비스의 합당한 조항을 추가할 권한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의 비용으로 주거 시설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에 더해, 합리적인 시설을 찾는 세입자와의 상호 소통의 과정에서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시설의 소유자가 주택 시설의 구매, 임대 또는 리스를 원하는 개인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이나 구두로 문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 불편이 있는 건물 출입구 한 곳 이상
2.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구역
3. 지붕이 있는 주거 시설 내로 들어가거나 통과할 수 있는 장애인용 통로
4. 휠체어에 탄 채로 출입, 통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 주방 및 화장실
5. 조명 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 조절 장치를 비롯한 환경 제어 장치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되어야 함
6. 향후에 번기, 욕조, 샤워실, 좌변기 주위에 안전 손잡이 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욕실 벽의 보강 작업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민원 제기처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